Vol.1523

법원공보

2017. 7. 1. SAT.

법원행정처

목 차

예 규

1029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032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1034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신법령 목록 1038

예 규

◎ 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31호 2017. 6. 14. 결재)

원천징수등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Ⅲ. 1. 중 “자필 서명을 하여”를 “자필 서명을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(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)을 통하여”로 한다.

Ⅲ. 2. 중 “1년간”을 “원천징수 동의기간(최대3년)동안”으로 한다.

Ⅲ. 3. 중 “1년 이내에”를 “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아래의 각주 4) 중 “1년”을 각각 “3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17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Ⅲ. 원천징수등 처리절차	Ⅲ. 원천징수등 처리절차
1. 법관이 규칙 제4조제1항제4호 에 따라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일정금액을 원천징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항목(예 : 상조회비, 동호회비 등)에 대하여 '원천징수 동의서'(별지 제1호 서식)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을 하여 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지출관(대리지출관, 분임지출관 및 대리분임지출관은 제외, 이하 '지출관'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1. ----------자필 서명을 하거나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(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)을 통하여----------.
* (생 략)	* (현행과 같음)
2. 원천징수 동의서는 지출관에게 제출한 날(우편으로 신청한 경우는 소인이 찍힌 날로 본다. 이하 같다)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.	2. ----------원천징수 동의기간(최대3년)동안--.
3. 원천징수를 동의한 법관이 동의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의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(사유 : 기관 전출, 본인 의사 변경 등)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'원천징수 동의(변경, 철회)서'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	3. ----------동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----------.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
현 행

〈별지 1〉

원천징수 동의(신규, 변경, 철회)서[1]

법관	소 속		직 급		
	성 명		생년월일		
원천징수동의사항	구 분[2]	동의 사항[3]	금액 (단위:원)	기간[4]	동의사유 등[5]
(이 하 생 략)					

1) ~ 3) (생 략)

4) 기간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1년간 동의한 것으로 보며, 필요시 1년 이내의 기간 기재 가능

5) (생 략)

개 정 안

〈별지 1〉

원천징수 동의(신규, 변경, 철회)서[1]

법관	소 속		직 급		
	성 명		생년월일		
원천징수동의사항	구 분[2]	동의 사항[3]	금액 (단위:원)	기간[4]	동의사유 등[5]
(이 하 생 략)					

1) ~ 3) (현행과 같음)

4) ----------3년----------

----3년----------

5) (현행과 같음)

◎ 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32호 2017. 6. 16. 결재)

집행관 및 집행관사무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(예 :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) 유무

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 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「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」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 (심사의 대상)	제5조 (심사의 대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가 사무원으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를 심사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4. 그 밖의 채용 및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·감독 등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(예 : 소속 지방법원의 현직 집행관과 배우자 또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등) 유무
〈신 설〉	③ 집행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는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원채용을 희망하는 자에게 「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」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◎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133호 2017. 6. 16. 결재)

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직무수행능력”을 “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탁월(5점), 우수(4점), 보통(3점), 미흡(2점), 불량(1점)”을 “탁월(4점), 우수(3점), 보통(2점), 미흡(1점)”으로 한다.

제4조를 제5조로 하고,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 (평정결과의 반영) ①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「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」 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, 징계,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.

별지 제1호 양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예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양식]

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표

<table>
<tr><td>소 속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성명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평 정 자</td><td colspan="2">확 인 자</td></tr>
<tr><td>평정
기간</td><td colspan="5"></td><td colspan="2">(인)</td><td colspan="2">(인)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근무
평정</td><td rowspan="2">총평점
(40점)</td><td colspan="7">평 정 사 항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평정점</td><td>근무실적</td><td>직무수행
능력</td><td>근무태도</td><td>친절도</td><td>청렴도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</td><td>평정자
(20점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확인자
(20점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평정
의견</td><td>평정자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tr><td>확인자</td><td colspan="7"></td></tr>
</table>

※ 평정요소 점수 : 탁월 4점, 우수 3점, 보통 2점, 미흡 1점

신·구조문대비표(Ⅰ)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평정의 기준)	제3조(평정의 기준)
① 근무평정은 직무수행능력, 근무태도, 친절도 및 청렴도를 평가한다.	① --------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----------
② 근무평정은 40점 만점으로 하되, 근무평정표에는 평정요소별로 탁월(5점), 우수(4점), 보통(3점), 미흡(2점), 불량(1점)으로 평가하여 그 점수를 기재하고 평정대상자에 대한 종합적 평가의견을 평정의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	② ----------탁월(4점), 우수(3점), 보통(2점), 미흡(1점)----------
〈신 설〉	제4조(평가결과의 반영) ①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「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」 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②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, 징계,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.
제4조(생 략)	제5조(현행 제4조와 같음)

신·구 별지양식 대비표(Ⅱ)

현 행

[별지 제1호]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표

소 속					평 정 자		확 인 자
평정기간					(인)		(인)
피평정자 성명	총평점 (40점 만점)	평 정 사 항					
		평 점 계	직무수행능력	근무태도	친절도	청렴도	평 정 의 견
○○○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○○○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○○○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○○○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○○○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○○○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
※ 평정요소 점수 : 탁월 5점, 우수 4점, 보통 3점, 미흡 2점, 불량 1점

개 정 안

[별지 제1호]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표

소 속		성 명		평 정 자	확 인 자
평정기간				(인)	(인)

근무평정	총평점 (40점)	평 정 사 항					
		평정점	근무실적	직무수행능력	근무태도	친절도	청렴도
		평정자 (20점)					
		확인자 (20점)					
평정의견	평정자						
	확인자						

※ 평정요소 점수 : 탁월 4점, 우수 3점, 보통 2점, 미흡 1점

신법령 목록 (2017. 6. 1. ~ 6. 15.)

		공포일	관보호수	관보면수
【조약】				
조약제2355호	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방위산업 및 군수지원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	2017. 6. 7	19024	4
【대통령령】				
대통령령제28085호	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6. 2	19022 (그2)	2
대통령령제28086호	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3
대통령령제28087호	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12
대통령령제28088호	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12
대통령령제28089호	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25
대통령령제28090호	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)	〃	〃	26
대통령령제28091호	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28
대통령령제28092호	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30
대통령령제28093호	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31
대통령령제28094호	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34
대통령령제28095호	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35
대통령령제28096호	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37
대통령령제28097호	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41
대통령령제28098호	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45
대통령령제28099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48
대통령령제28100호	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	〃	〃	49
대통령령제28101호	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6. 13	19028	4
대통령령제28102호	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4
대통령령제28103호	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과 중복·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6

대통령령제28104호	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2017. 6. 13	19028	8
대통령령제28105호	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10
대통령령제28106호	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11
대통령령제28107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11
대통령령제28108호	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〃	〃	12

【부령】

농림축산식품부령제264호	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1	19021	5
기획재정부령제624호	일본·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	2017. 6. 2	19022	4
행정자치부령제121호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6
농림축산식품부령제266호	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9
농림축산식품부령제267호	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23
농림축산식품부령제268호	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28
산업통상자원부령제260호	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03
산업통상자원부령제261호	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06
산업통상자원부령제262호	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09
보건복지부령제498호	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14
보건복지부령제499호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16
해양수산부령제235호	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18
국토교통부령제425호	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2	19022 (그2)	50
국토교통부령제426호	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59
국토교통부령제427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66
문화체육관광부령제296호	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7	19024	11
국방부령제926호	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8	19025	4
국토교통부령제424호	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4
보건복지부령제497호	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	〃	〃	6
농림축산식품부령제269호	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9	19026	3

환경부령제703호	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12	19027	3
문화체육관광부령제297호	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6
기획재정부령제625호	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13	19028	13
농림축산식품부령제270호	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〃	〃	13
보건복지부령제500호	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14	19029	3
고용노동부령제186호	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2017. 6. 15	19030	4